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('22.2.4.적용)

1. 관 련 :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593('22.1.28.)호

2. 제7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TF회의('22.1.28.) 및 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('22.1.27.)에서 **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**함을 알려온 바,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내 용

구 분	방역조치	
	현 행	변 경
해외입국자 격리기간	10일 ※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,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	**7일** ※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,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
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	격리면제 중단 ※모든 국가/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	**격리면제 중단 유지** ※모든 국가/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**지정 연장**
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	직항편 운항 중단	**직항편 운항 재개**
아프리카 11개국* 출발·체류·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	입국 불허(금지)	**입국 허용**
아프리카 11개국* 출발·체류·경유가 확인된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	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	**임시시설 격리·검사 해제** ※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(7일격리, PCR 3회 등)
아프리카 11개국* 外 아프리카 출발·체류·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	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검사(승무원 포함)	**임시시설 검사 해제** ※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(7일격리, PCR 3회 등)

* 가나, 잠비아, 남아공, 나미비아, 모잠비크, 레소토, 말라위, 보츠와나, 에스와티니, 짐바브웨, 나이지리아

※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

나. 추가사항

-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(미소지자 포함), 5일 시설비용 자부담 + 2일 자가격리 실시
-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

다. 적용시기 : '22. 2. 4. 0시 입국자부터
- 단,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(8일차 12시)에 격리해제 가능. 끝.

교 육 부 장 관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고등외국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	김유진	행정사무관	김미희	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	전결 2022.2.3. 최보영

협조자

시행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-378 ((2022.2.3.)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14동 (어진동) / https://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7142 전송 044-203-7079 / kyj2126@korea.kr / 공개